

#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심사결과보고

2001. 5. 28  
교육사회위원회

## 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5월 9일(충청북도지사 제출)
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5월 10일
- 다. 상정일자 : 2001년 5월 22일(제188회임사회 2차교육사회위원회)

## 2. 제안설명요지(공무원교육원장 심상결)

### 가. 제안이유

-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교육운영과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시설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시설물의 사용범위(제2조)
  -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대강당, 강의실, 분임토의실,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관련 시설과 숙박 및 체육시설,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로 함.
- 사용료(제6조)
  - 시설물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함
    - 교육시설 : 대강당(10~15만원), 강의실(3~5만원), 분임토의실(2만원), 전산실습실(10만원), 어학실(6만5천원)
    - 숙박시설 : 생활관(3~5천원)
    - 체육시설 : 운동장(7만원), 테니스장(2만원)

- 사용자의 책임(제9조)
  -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,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를 하도록 함
- 준용규정(제10조)
  - 사용료의 징수·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름

### 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범수)

- 먼저 법령의 근거로는
  -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(제127조, 제130조),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(18조)의 위임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
- 제정배경을 살펴보면
  - 기존의 행정기관과 공무원 위주로 사용해오던 대강당, 어학실, 전산실습실 등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역주민과 단체, 협회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
  - 대주민의 홍보차원과 지역주민, 민간단체, 협회 등과의 관계 유지로 행정의 신뢰를 한층 더 다질 수 있는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필요한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용범위)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대강당, 강의실, 분임트의실,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시설물
2. 숙박 및 체육시설
3.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등

제3조 (사용허가 및 신청) ①교육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교육원 사용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교육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·통지하여야 한다.

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 (사용허가의 제한)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2. 시설물의 개·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
3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
4.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5조 (사용허가의 취소등) 교육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
3. 기타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6조 (사용료) ①교육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사용료는 실비 범위내에서 징수하되 별표와 같다.

제7조 (사용료 감면) 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
2. 기타 교육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

제8조 (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①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제9조 (사용자의 책임)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준용규정) 사용료의 징수·반환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